#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1541

제출연월일: 2021. 2. . 제 출 자: 성동구청장

### 1. 제안이유

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유관기관(성동경찰서)과의 주요 협력 활동에 대한 명시적, 구체적 근거를 규정하고,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 담당부서의 분석정보 활용하는 방안을 신설 (안 제5조)
- 나.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운영 중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고, 조례 내 인용된 제명 변경 사항 반영(안 제8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「지방자치법」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
  - 1)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, 별첨
- 다. 기 타
  - 1) 입법예고(2020. 12. 31. ~ 2021. 1. 2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  - 2) 규제심사 결과, 행정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
  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  - 4) 성별영향분석평가, 특기할 사항 없음
  - 5) 신 · 구조문대비표, 별첨

#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호 중 "구민"을 "서울특별시 성동구민(이하 "구민"이라 한다)"으로 한다.

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 담당부서의 분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.

제8조제1항제2호 중 "제6조"를 "제6조에 따른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」 제8조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신하다.
-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 부서의 분석업무 담당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기본방향) 서울특별시 성동	제3조(기본방향)
구(이하 "구"라 한다)의 범죄예	
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의 기	
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	3
여 <u>구민</u> 이 자유롭게 사용하거	<u>서울특별시 성동구민(이하</u>
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.	<u> "구민"이라 한다)</u>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	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
(생 략)	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
	승)
<u> &lt;신 설&gt;</u>	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
	때에는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
	담당부서의 분석 정보를 활용할
	<u>수 있다.</u>
제8조(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	제8조(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
디자인위원회 설치) ① 구청장	디자인위원회 설치) ①
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	
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	
사항을 심의・자문하기 위하여	
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 도	
시환경디자인위원회(이하 "위	
원회"라 한다)를 설치・운영할	

수 있다.

- 1. (생략)
- 2. 제6조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 2. 제6조에 따른 -----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수립
  - 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
- 3. 4. (생략)
-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 은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 자인 조례 | 제6조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위원회가 대 신한다.

<신 설>

_	_	_	_	_

- 1. (현행과 같음)

- 3. 4. (현행과 같음)
-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 은「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 자인 진흥 조례 제8조의 서울 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가 대신한다.
-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 부서의 분석업무 담당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<u>있다.</u>

##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1. 비용발생 요인

○ 유관기관(성동경찰서)과의 주요 협력 활동에 대한 명시적,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는 단순 조례 개정으로 비용발생 없음

#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1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, 한시 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

### 3. 미첨부 사유

○ 유관기관과의 주요협력 활동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,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, 조례 개정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부분은 없음

### 4. 작성자

○ 도시계획과 시설7급 김현신 (연락처 2286-5875)

### < 관계 법 규 >

### □ 지방자치법

-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
    - 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
    - 나. 조례 · 규칙의 제정 · 개정 · 폐지 및 그 운영 · 관리
    - 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    - 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 · 감독
    - 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 · 후생복지 및 교육
    - 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    - 사.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    - 아. 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    - 자. 공유재산관리(公有財産管理)
    - 차.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
    - 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
  - 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    - 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    - 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· 운영 및 관리
    - 다. 생활이 곤궁(困窮)한 자의 보호 및 지원
    - 라.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    - 마. 보건진료기관의 설치 · 운영
    - 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- 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- 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- 자. 청소. 오물의 수거 및 처리
- 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- 3. 농림·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
  - 가. 소류지(小溜池) · 보(洑)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  - 나. 농산물・임산물・축산물・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
  - 다. 농업자재의 관리
  - 라.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
  - 마.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
  - 바. 농가 부업의 장려
  - 사. 공유림 관리
  - 아.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
  - 자. 가축전염병 예방
  - 차. 지역산업의 육성 · 지원
  - 카.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
  - 타. 중소기업의 육성
  - 파.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
  - 하.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
- 4.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사무
  - 가. 지역개발사업
  - 나. 지방 토목 건설사업의 시행
  - 다. 도시계획사업의 시행
  - 라. 지방도(地方道), 시군도의 신설・개수(改修) 및 유지
  - 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  - 바.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
  - 사. 자연보호활동

- 아.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
- 자. 상수도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
- 차.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카. 도립공원·군립공원 및 도시공원, 녹지 등 관광·휴양시설의 설 치 및 관리
- 타.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
- 파. 주차장 · 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하.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
- 거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
- 5. 교육・체육・문화・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
  - 가. 유아원·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·운영·지도
  - 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 당 등 공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  - 다. 지방문화재의 지정・등록・보존 및 관리
  - 라. 지방문화 · 예술의 진흥
  - 마. 지방문화 · 예술단체의 육성
- 6.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
  - 가.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(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)의 편성과 운 영 및 지도·감독
  - 나. 지역의 화재예방・경계・진압・조사 및 구조・구급